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2799 발 의 년 월 일 :2021년 10월 15일 발 의 자 :이영실, 권순선, 김경영, 김경우, 김제리, 김화숙, 박기재, 이병도, 조상호, 최 선, 홍성룡 의원(11 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·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, 지원 대상이 타 시도에 비해 협소한 실정임.
- 이에 6.25,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지원 대상에서 상이자 및 고엽제 후 유의증 대상자 제외 기준을 삭제하고,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을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보훈급여금(상이자) 및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대상자까지 확대함. 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대상) 예우 및 지원대	제3조(지원대상)
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	
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	
고,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	
으로 한다. <u>다만, 다음 각 호의 어</u>	<u>(삭제)</u>
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	
<u>한다.</u>	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	1. (삭제)
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4호·	
제6호·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	
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	
훈급여금을 받는 사람	
2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	2. (삭제)
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	
조의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	

문서번호

2021101200000064

비용추계서

요 청 인 : 보건복지위원회 담 당 : 조도형 과장

이원상 팀장

이혜린 예산분석관

접 수 일: 2021.10.12

회 신 일 : 직접입력

내용문의: 02-2180-7955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목 차

- Ⅰ. 비용추계 요약
- 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에서 참 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을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보훈급여금 및 고엽제후유증 수당 대상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, 대상

○ 제3조에서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른 추가 비용

나. 전제

- 참전유공자 인원은 최근 5개년도 감소추이를 반영하여 연 평균 6% 감소율 적용하였으며, 타 보훈수당 중복자 1,930명은 매년 변동없음을 전제하고 이를 제외함
- 참전명예 수당은 정액수당으로 1인당 월10만원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
- 기존 참전명예수당 연 지급인원 31,440명을 제외한 추가 인원으로 추계
-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- 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함(2022년~2026년)

라. 방법

○ 모든 비용은 동 조례안 제3조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≒ 45,187,200천원(연평균 9,037,440천원)
 - 총 비용 =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합계
세입	-	_	-	_	_	_	_
게铂	소계(a)	_	-	-	-	-	_
세출	제3조 (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)	15,291,600	11,971,200	8,850,000	5,916,000	3,158,400	45,187,200
	소계(b)	15,291,600	11,971,200	8,850,000	5,916,000	3,158,400	45,187,200
	총비용(b-a)	15,291,600	11,971,200	8,850,000	5,916,000	3,158,400	45,187,200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원상

주 무 관 이혜린

2 02-2180-7955

e-mail: lovelynn91@seoul.go.kr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○ 제3조에서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른 추가 비용

2. 세부추계내역

○ 참전유공자는 고령화로 인한 사망 등으로 '17년~ '21년 평균 5.7% 감소하고 있음

(단위: 명)

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전 체	62,088	58,507	55,147	52,310	49,056
감소인원	_	△3,581	$\triangle 3,360$	$\triangle 2,837$	$\triangle 3,254$
감소율	_	5.8%	5.7%	5.1%	6.2%

※출처: 국가보훈처 통계자료

○ '22년~ '26년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예상 추이

- 연6% 감소율 반영, 타 보훈수당 중복자 1,930명 제외

(단위: 명)

구 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참전유공자(a)	46,113	43,346	40,745	38,300	36,002
타 보훈수당 중복자(b)	1,930	1,930	1,930	1,930	1,930
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(c=a-b)	44,183	41,416	38,815	36,370	34,072

○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대상자 수

구 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(a)	44,183	41,416	38,815	36,370	34,072
기존인원(b)	31,440	31,440	31,440	31,440	31,440
추가지급인원	12,743	9,976	7,375	4,930	2,632
(c=a-b)	12,743	9,970	7,373	4,930	2,032

- \bigcirc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= $\sum_{i=1}^{5}$ (연간참전명예수당지원추가비용)i
 - i = 비용추계 연차(2022년~2026년)
 -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= 45,187,200천원

- · 1차년도 = 15,291,600천원
 - = 12,743명×100천원×12월
- · 2차년도 = 11,971,200천원
 - = 9,976명×100천원×12월
- · 3차년도 = 8,850,000천원
 - = 7,375명×100천원×12월
- 4차년도 = 5,916,000천원
 - = 4,930명×100천원×12월
- · 5차년도 = 3,158,400천원
 - = 2,632명×100천원×12월